

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아이수루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46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6년 02월 09일
발 의 자: 아이수루 의원(1명)
찬 성 자: 김기덕, 김길영, 김성준,
김원태, 김인제, 민병주,
박강산, 박수빈, 박승진,
박철성, 봉양순, 송도호,
유정희, 임종국, 정준호,
최재란 의원(16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 외국인주민은 40만 명 이상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,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포용적 행정체계 구축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나, 기존 센터 운영이 구마다 상이하며, 인력·예산 차이로 서비스 품질 격차 발생하고 있음
- 특히, 센터 운영 기준을 명문화하여 서비스 품질 균형을 확보하고, 공무원의 다문화 인식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
- 이에,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운영 기준 관련,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및 공무원에 대한 교육 의무화 조항 신설을 통해, 외국인주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운영 등의 관리 지원 및 보수교육 조항 신설 (안 제18조)
- 나. 공무원의 교육에 관한 조항 신설함 (안 제22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등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시장은 지원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 법령 및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지원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, 지원하여야 한다.

⑤ 시장은 지원시설에 두는 인력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하고,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(공무원의 교육)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8조(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 등) ① ~ ③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 설>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 설>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 설></u></p>	<p>제18조(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시장은 지원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 법령 및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지원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, 지원하여야 한다.</p> <p>⑤ 시장은 지원시설에 두는 인력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제22조(공무원의 교육) 시장은 <u>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.</u></p>
<p><u>제22조 ~ 제25조</u> (생략)</p>	<p><u>제23조 ~ 제26조</u> (현행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와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관리·지원하여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및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,
- 지원시설 운영에 대한 시장의 관리·지원 의무는 해당 조항으로 추가적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는 사항이며, 시설 종사자 보수교육과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현재 관련부서에서 운영 중¹⁾인 것으로 확인되어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과
재정분석과장	이 선 희
추계세제팀장	김 중 헌
추계분석관	권 봉 수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hibedoge06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1)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종사자 교육_상당기초교육(다문화 이해와 고객서비스 기본매너 등)(서남권글로벌센터), 내부직원 등을 위한 문화 다양성 이해교육(문화다양성 전문강사 양성,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교육 등)(서울특별시 다문화담당관)